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9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형우(공판)  
판 결 선 고 2019. 10. 23.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5경 배우자 소유의 B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조안 IC 인근 신양수대교 방향에서 팔당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C호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봉안터널 내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위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 하였으며, 이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F의 진술서

####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 2. 양형기준의 적용<sup>1)</sup>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1)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6. 10.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한옥형      \_\_\_\_\_